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 월 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앞

본인 주소 _____ (인)

본인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 1 조 보증한도, 거래기간

- 지급보증한도(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포함)는 금 _____ 으로 한다.
-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1항의 한도액이나 제2항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보증에 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제 2 조 감액, 정지, 해지

-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국가신용평가등급의 2등급이상 하락 또는 주가지수,금리,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대규모기업의 부도 등)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차주의 신용등급의 2등급이상 하락 등)로 인해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동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제1항에 의한 감액, 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초과지급 보증금액 상당액, 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가 된 때의 지급보증금액 상당액을 곧 갚기로 한다.

제 3 조 지급보증 부탁방법

본인이 은행에게 지급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지급보증신청서에 의한다.

제 4 조 지급보증방법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어음인수, 보증신용장의 발급 기타의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보증료 등

-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한 요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보증료를 지급한다.
- 본인이 제1항의 보증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_____ %율로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동 지연배상금의 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인이 제6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전까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배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주채무 이행 이전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까지 위와 같이 계산한 특별 배상금을 지급한다.

(4) 본인이 제7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 채무 소멸일 익일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제1항에 의한 보증료율에 의하여 산출한 특별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6 조 주채무의 이행의무

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 전에 지급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본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 7 조 통지의무

(1)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가**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곧 이를 은행에 통지한다.

(2)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은행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이를 은행에 통지한다.

(3)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 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는다.

제 8 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지급요건(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 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 금액은 상호 합의한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한다. 그 경우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즉시 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9 조 상환범위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범위는 은행의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행금액에 대하여 연 ___%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과 이행에 든 비용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지연배상금의 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함.

본 인

(인)
